

# 안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박은경 의원 대표발의 ]

의안 번호	8-169
----------	-------

발의년월일 : 2019. 5. .  
발 의 자 : 박은경 의원 등 16명

## 1. 제정이유

- 안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목적 및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시행계획수립 및 지원 사업을 정함(안 제4조, 제5조)
-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1

4. 관계법령발췌서 등 : 붙임2

5. 예산수반사항 : 붙임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6.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7. 기타참고사항 : 붙임4 (부서 검토의견 및 반영결과)

## 【붙임 1】

# 안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산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다.
3.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적절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지원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6조(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① 시장은 시 장애인문화 예술지원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전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안산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장애인 문화예술활동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안산시문화예술진흥조례」에 의한 안산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역할을 대행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1월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안산시의회
입 안 자	시의원	박은경 의원 대표발의 (행정 3564)